

<제 708호>

- 주간 -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I. 회원사 동정

광주은행

◆ ‘희망이 꽂피는 공부방’ 70호점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광주애육원에서 ‘희망이 꽂피는 공부방’ 70호점 선정식을 가졌다. ‘희망이 꽂피는 공부방’ 70호점으로 선정된 광주애육원은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아동양육시설로 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1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송종욱 은행장과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은 광주애육원의 노후된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책상과 의자, 에어컨 등을 교체해 쾌적한 학습환경을 만들어주고, 새롭게 단장한 광주애육원의 도서실에서 아동들과 함께 다과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앞으로도 우리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광주은행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 2022 임금교섭 조인식



해양에너지는 지난 10일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서 노사는 대내외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노사문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I. 회원사 동정

적십자사

◆ 창립 117주년 연차대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는 지난 9일 양리뒤낭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17주년 광주 · 전남지사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정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을 비롯한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문인 북구청장, 조덕선 사랑방미디어 회장, 탁인석 광주문인협회장, 적십자 봉사원 ·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로 ▲적십자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 (주)럭키산업 박홍석 대표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대장 허정 회장 ▲적십자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 (주)화인데코 이상철 대표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장 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 ▲바로연 전지연 대표 ▲적십자 장기봉사 봉사원상 백점심 관산읍봉사회원 ▲대한적십자사 회장표창 송경용 동신대학교 대학원장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이정희 금호1동 봉사회원 등 총 654명이 수상했다.

허정 회장은 “적십자 봉사원과 많은 후원자분들 그리고 협력기관이 있었기에 어려운 이웃에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희망의 등불로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알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으나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3425@naver.com

II. 광주경총 소식

<제1578회 금요조찬포럼>

강사:김준하(광주과학기술원(GIST)교수) 주제:미래산업 패러다임 대전환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1월11일 광주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를 초청 <미래산업 패러다임 대전환 Mobility of Things 다섯가지 이야기>란 주제로 제1578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1. MoT 기반 도시를 상상하라! 사물 이동체(Mobility of Things) 시대는 먼 미래가 아니다. NDVIA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하늘길을 2030년에 열 것이다. 2.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라! 인공지능 시대도 먼 미래가 아니다. AI혁명에 따른 사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특이점 시대가 옴에 따라 2030년경은 현대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다. 미래는 기다림 없이 다가온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요구된다. 3. 시스템 반도체를 선점하라! 반도체 산업단지는 우리 동네 이야기다. 반도체는 전기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정도 되는 물질로 전기신호(통신)처리 와 데이터 처리로 활용되며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분류된다. 메모리반도체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70% 정도이나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3~5%정도이며 메모리 반도체보다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크다. 4. AI반도체를 특화하라!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연결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반도체란 일종, 학습, 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대규모 데이터 연산을 높은 성능 및 낮은 전력으로 처리하는 반도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서 자율주행차로, 차량반도체의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반도체로 변화한다. 5. 메타버스는 MoT 기술의 끝판! 가상공간 시대도 먼 미래가 아니다.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기술의 현상황은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서비스중인 플랫폼으로는 게임, 기업 교육, ‘로지’광고, 부동산, 증권 상담, 예약 등 다양하게 이용 중이다. MoT 대전환은 예고 되었다. 구성원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일으켜라! 창의란 그저 서로 다른것을 연결한 것이며 모든분야는 연결과 융합의 힘이 필수적이다.

이런 미래의 비전과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이라는 업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세계 3대 IT행사에 속하는 가장 영향력 있고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박람회(CES)’에 참여해 볼 것을 추천한다.



II. 광주경총 소식

<중장년센터 제30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10일 하남혁신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제30회 생애 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직자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에너지 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13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11.7 ~ 11.11)

11.9 (수)	● 무등일보 CEO 아카데미	11.11 (금)	● 제1578회 금요조찬포럼
11.10 (목)	● 중장년센터 제30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직자과정 운영		

III. 노사 및 법제동향

1. 노사 동향

■ 노사공포럼·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노사공포럼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11. 8 ‘노동개혁의 방향과 성공전략’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 ※ 주요 참석자
 - (발제) 최영기 前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 (토론) 류기정 경총 전무,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이정 한국외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 최영기 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고용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임금체계 유연화 만으로는 이중구조를 개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발표
 - 박지순 교수는 공장법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노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

■ 고용부,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협의체 출범

- 고용부는 11. 9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발족
 - ※ 「조선업 상생협의체」발족은 10. 19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임.
 - ※ 협의체 구성 :
 - (원청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 (협력사) 동형이엔지, 척추산업 등 5개사
 - (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전문가) 배규식 前 노동연구원 원장, 권혁 부산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정홍준 서울과기대 교수,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
 - (자치단체)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병규 경남 경제부지사, 이건섭 전남 일자리 경제본부장

III. 노사 및 법제동향

- 동 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구성됐으며, 향후 노사 의견청취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실천협약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운영해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 예정
- 또한 고용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업계 애로사항 해결 방안 등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

III. 노사 및 법제동향

2. 법제 동향

■ 강은미 의원(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3)

- (발의 이유)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있어,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면서도 소득이 불안정해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기존 지역가입자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직장가입자로 편입

■ 강은미 의원(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3)

- (발의 이유) 현행법(국민연금법 제9조)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있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면서도 소득이 불안정해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기존 지역가입자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

■ 강대식 의원(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4)

- (발의 이유)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일용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반복 교육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으로 대체 가능
 - * 일용근로자가 채용 이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불필요(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일용근로자가 많은 ‘물류업’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필요성 제기

III. 노사 및 법제동향

- (주요 내용) 물류업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허용

■ 김민기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4)

- (발의 이유) 현행법(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취업규칙 작성·변경을 위한 의견 제출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 ①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시,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으로 처리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의무 부여

■ 고민정 의원(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4)

- (발의 이유)
 - ① 현행법(노동조합법 제2조)상 근로자 범위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② 현행법(노동조합법 제2조)상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국한시키지 않고 권리분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근로자·사용자 범위 관련 주요 내용)
 - ①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
 - ②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간주
- (노동쟁의 범위 관련 주요 내용)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경영상 해고 포함)·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지위(사업재편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포함),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

III. 노사 및 법제동향

- (손해배상 · 가압류 관련 주요 내용)
 - ① 사용자는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불가
 - ②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불가
 -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 청구 불가
 - ④ 이 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
 - ⑤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노동조합의 존립이 가능한 범위까지로 한정
 - ⑥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
 - ⑦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소권을 남용할 수 없다고 규정
 - ⑧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
 - ⑨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제,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규정
 - ⑩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가능
- ※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관련, 고민정 의원안 포함 총 9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임.

■ 강은미 의원(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4)

- (발의 이유) 현행법(근로기준법 제78조 · 제79조)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하고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휴업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업무 외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의 휴업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 ①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유급 질병휴가를 주도록 규정

III. 노사 및 법제동향

② 근로자가 사용한 질병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질병급여를 지급

■ 강은미 의원(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4)

- (발의 이유)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급금액·보장기간의 확대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건강보험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질병·부상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

■ 양향자 의원(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8)

- (발의 이유)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어,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근로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

■ 김성환 의원(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8)

- (발의 이유) 현행법(상생협력법 제22조의2)상 수탁기업은 공급원가 변동시 위탁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산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② 위탁기업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납품대금 갈등 조정

III. 노사 및 법제동향

등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 설치 가능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조정 지급 등을 성실히 이행한 위탁기업에게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포상
- ⑤ 표준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김성환 의원(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8)

- (발의 이유) 현행법(하도급법 제16조의2)상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②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연동요건에 해당할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지급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해 고시
 - ④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벌칙 부과

■ 박대수 의원(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9)

- (발의 이유) 현행법(건설근로자법 제7조의2)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는 사업주가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4조)에 위임
- 고용노동부령에는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외에는 구체적인 위치 기준이 없어 고층건축물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인원수에 따른 설치 기준이 없어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